

과업지시서

1. 과업 명칭 : 백남준아트센터 산책로 환경개선공사

2. 과업 목적

- 가. 노후 목재데크 및 계단, 천연잔디를 정비하여 관람객 안전 확보
- 나. 적정시기 노후설비 교체로 시설물의 항상성 유지

3. 과업 범위

가. 철거 관련

- 1) 데크계단A 철거(L=36m)_백남준아트센터 뒤편 잔디언덕 좌측 목재계단
- 2) 데크계단B 철거(L=29m)_백남준아트센터 뒤편 잔디언덕 우측 목재계단
- 3) 데크침터 철거(336㎡)_백남준아트센터 카페 야외 목재데크
- 4) 원주목계단A 철거(W2000×H100 / 8EA)_경기도어린이박물관 산책계단
- 5) 원주목계단B 철거(W1500×H100 / 8EA)_경기도어린이박물관 산책계단
- 6) 디자인형울타리 철거(W2000×H1200 / L=65m)_경기도어린이박물관 산책계단
- 7) 사고석 포장 철거(336㎡)_백남준아트센터 카페 야외 목재데크 하부
- 8) PE배수로 철거(W300 / L=8m)_경기도어린이박물관 산책로
- 9) 임목잔재 철거(30㎡)_백남준아트센터 뒤편 용외산 자락
- 10) 위험목 제거(B11~21cm미만/6주)_백남준아트센터 뒤편 용외산 자락
- 11) 위험목 제거(B21~31cm미만/3주)_백남준아트센터 뒤편 용외산 자락
- 12) 빛나무단근처리(B40, 뿌리돌림/3주)_백남준아트센터 카페 야외 목재데크

나. 시공 관련

- 1) 데크로드1(W1.5m×L120m) 기초공사_백남준아트센터
- 2) 데크로드2(W1.5m×L73m) 기초공사_상갈공원 배드민턴장 부근
- 3) 데크로드3(W1.5m×L134m) 기초공사_경기도어린이박물관
- 4) 데크침터(카페 야외데크 / 336㎡) 기초공사_백남준아트센터
- 5) 데크계단A(W1.2m×L33m, H180, 43단) 기초공사_백남준아트센터
- 6) 데크계단B(W1.2m×L29m, H180, 41단) 기초공사_백남준아트센터
- 7) 데크계단C(W1.2m~1.5m×L47m) 기초공사_경기도어린이박물관

- 8) U형플룸관 설치(W300 / L=8m)_경기도어린이박물관 산책로
- 9) 산딸나무 이식(R20=17주, R15=2주)_경기도어린이박물관 산책로
- 10) 산사나무 이식(R12=1주)_경기도어린이박물관 산책로
- 11) 잔디불임(평떼, 0.3*0.3, 중지 / 44㎡)_백남준아트센터
- 12) 도급자관급자재 설치(HS-DW103, 세줄형 난간/1EA)

다. 본 과업에서 정한 관련 부품의 수급 및 보수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4. 과업 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나. 작업이 완료된 후라도 작업과 관련한 업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5. 세부 지침

가. 작업 기간 중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여 작업할 것이며, 발주자의 공유 시설물의 손실 및 훼손 시에는 배상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중 1인은 안전 시공을 책임지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반 작업을 지휘한다.

다. 반입된 자재는 발주자가 지정한 KS 규격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이 입고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변경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작업계약을 취소하고 타 업체가 시공하여도 민·형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작업 시작 전 손상 가능 부분에 보양을 철저히 하며 기존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고, 관련된 시설물의 파손 시 원상 복구한다.

마. 본 공사는 조경공사와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시공 규격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바. 공사 세부 상세 내역 및 설계변경 등은 감리자 및 감독자의 협의에 따라 진행한다.

사. 착공 후 발주자가 공사 진행 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수시 및 정기보고 형태의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감리자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아. 투명한 공사비(사업비) 지출 및 사업비 정산 증빙을 위해 공사 관련 세부 증

빙자료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 서류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감리자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자. 과업 수행의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따른 보완요청 후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해제되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구조계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설계하중의 상태와 재료 강도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시공 전 불합리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 변경 받아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구조계산서를 최종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6. 감 독 관

본 과업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작업에 사용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7. 감 리 자

본 과업에서 감리자라 함은 발주처에서 별도 선임한 공사감리자를 말한다.

8. 현장대리인(안전시공책임자)

계약상대자는 작업착수 전 현장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 있어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현장대리인은 작업 진행 및 기타 일체의 작업사항에 대하여 수급자(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매 공사 시작전 발주처에 보고하고 공사업체 직원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9.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에 따라 현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대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행

- 과업 수행사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등의 지정과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같이 제출하고 사업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함.
- 관리책임자는 안전한 과업수행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재단의 안전보건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관리책임자는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 법률위반, 권리침해 등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어야 함.
- 과업수행사는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 완료 시 정산하여야 하며, 사업장별 납입확인서 및 사용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작업 시작 전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보호구 착용, 안전조치 등)를 실시하여야 함
- 공사(사업)담당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사업 중지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 중지가 된 경우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되었던 위해 위험 요인 등의 조건을 개선한 이후 사업을 재개하여야 함.
- 비상 시 대피로와 비상 집결 장소를 사전에 숙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 및 재해는 지체없이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가. 안전관리

-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행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2) 작업일보는 매일 작성하여 감리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며, 공사인원의 관리 및 흡연 등이 없도록 현장대리인 상주하여 관리한다.

나. 안전조치

- 1) 시공 중 호우,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유사 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 2) 착공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등

3)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안전교육

감독관이 지시하는 유지보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라. 안전시공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설치 중인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설치 방법, 설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 설치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작업 시에는 항상 안전용구를 착용하고 안전교육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마. 사고 보고 및 응급조치

1)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 사상사고
-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 사고, 차량 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보고하고, 추후 서면 보고 한다.

바. 환경오염관리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작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시설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사. 폭염작업관리

1)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할 것

가) 온도계를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나) 작업자 대상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2) 5대 기본수칙을 준수 할 것

가)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나) 바람,그늘: ① 옥외 작업 시 냉방장치나 그늘막 설치
 ②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 다) 휴식: ①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②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
 ③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 작업 시 매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라) 보냉장구: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 장구 지급
- 마) 응급조치: ①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신고
 ②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신고

3) 작업중지에 따를 것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감독관은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4) 온열질환 민감군을 특별히 관리할 것
- 가) 온열질환 민감군은 다음과 같다.
- ① 폭염작업신규배치자 ②과거온열질환 경력자
 - ③고령자,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자

- 나)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 ①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 ② 신규배치자 등에 대한 폭염작업 시간 단계적 증가
 - ③ 주기적으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④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

- 5) 온열질환 응급조치를 숙지할 것
- 가)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나)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
- 다)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 라)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10. 제반 서류 제출

- 가.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 착공계 등의 계약과 관련한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 담당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 나. 작업 전·후 및 주요 부분 작업 시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계 제출 시 첨부한다.
- 다. 공사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 라. 공사계약 시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다.

11.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끝.